

##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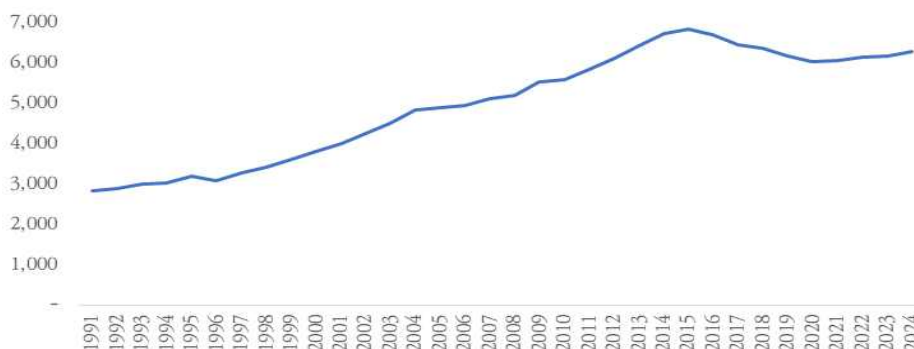
최근 기업성 보험시장 내에서 충당하기 어려운 리스크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전통 보험을 보완하는 수단인 캡티브 보험이 성장하고 있음. 유럽에서는 대형 리스크의 증가, 리스크파이낸싱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조세·감독 환경 변화 등으로 온쇼어 캡티브의 활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국내도 향후 대형 리스크 증가에 따른 기업보험 보장 공백 대응과 리스크파이낸싱 서비스 경쟁력 확보 관점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사이버, 재해, 공급망 불안 등으로 기업성 보험시장 내 리스크가 커지면서 캡티브 보험회사(이하 '캡티브')의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유럽에서 자국 내 캡티브 설립을 촉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캡티브는 기업이 자사·그룹 리스크를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보험회사 (또는 재보험사)이며, 기업이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기업성 보험(Commercial Insurance)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보장 공백을 메우고 총위험비용<sup>1)</sup> 변동을 완충하는 수단으로 활용됨
- 전 세계 캡티브의 수는 1991년 약 2,800개에서 2024년 6,290개로 증가했으며, 글로벌 기업성 보험시장에서 캡티브가 차지하는 비중은 보험료를 기준으로 약 25% 수준(약 1,760억 달러)<sup>2)</sup>까지 확대됨(〈그림 1〉 참조)
- 기존의 유럽 캡티브 시장은 버뮤다,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등 전통적인 캡티브 허브에 집중된 구조였으나, 최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이 자국 내 설립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캡티브 시장이 재편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그림 1〉 1990년대 이후 글로벌 캡티브 보험회사 수 추이

(단위: 개)



자료: ACC 2024(2024. 9. 19.), "ASIAN ANCHORS: LEADING THE WAY IN CAPTIVE INNOVATION"

1) 총위험 비용(Total Cost of Risk: TCOR)이란 기업이 리스크 때문에 1년 동안 실제로 부담한 비용의 총합으로 보험료, 자기부담금, 공제액, 클레임, 사고 처리 비용, 리스크관리 비용, 예방 비용 등을 포함함

2) Insurance Asia(2024. 6. 28.), "What five challenges do companies face transitioning to captives?"

○ 유럽 국가들의 온쇼어 캡티브 설립의 배경으로는 크게 ① 캡티브 필요성의 증가, ② 금융허브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생태계 강화의 필요성 증가, ③ 조세 및 감독 정책의 변화를 들 수 있음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이버, 대형 재해 리스크의 상승으로 기업은 보험료의 상승, 보험 한도 축소, 인수거절 등의 하드마켓(Hard Market) 현상을 경험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리스크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캡티브 활용 및 재보험 연계의 필요성이 증가함
- EU 및 영국은 향후 성장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주요 과제로 자본 동원 및 금융 인프라 확보를 설정<sup>3)</sup>하고 이를 위한 금융 생태계 강화 도구로서 캡티브의 역할에 주목함
  - 캡티브는 단순히 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하고 위험을 인수하는 것 이외에 재보험 범위 설정, 국가별 프론틱 설계가 수반되므로 브로커링, 재보험, 중개, 회계·계리, 자산운용 등 기업 리스크파이낸싱 전문 수요를 동반함
  - 따라서 캡티브 유치는 기업의 보험료 및 재보험료 지출 흐름을 내부화할 뿐만 아니라 고부가 보험, 재보험 전문 서비스 생태계를 국내에 축적해 보험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음
- 과거 캡티브의 오프쇼어링 전략은 세무상으로 유리한 측면<sup>4)</sup>이 있었지만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Two, GloBE)로 인해 낮은 세율의 이점이 상쇄되었으며, EU의 감독 정책은 EU 역내에서 캡티브에 대한 감독관행과 해석이 국가별로 상이한 규제·감독 차익 가능성을 지적하고 감독 정책의 수렴을 추진함
  - 글로벌 최저한세는 매출이 큰 다국적 기업이 어느 나라에서 이익이 나든 그 나라에서의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으면 부족분을 추가로 충당하도록 요구해 15% 수준까지 맞추게 하는 국제 규칙임(2024년 시행)
  - EIOPA는 기존의 규제·감독 차익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 캡티브에 대해 리스크 기반, 규모에 따른 비례적 감독을 유지하되 그 비례적 감독의 나라별 격차를 줄이도록 했으며, 이는 EU 안에서의 캡티브 감독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도록 하여 비(非)EU 오프쇼어로의 캡티브 이전 유인을 간접적으로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옴<sup>5)</sup>

○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유럽 내 프랑스와 영국은 가장 먼저 자국 내 캡티브 설립을 뒷받침하는 별도 제도와 감독 체계를 마련하며, 온쇼어 캡티브 정책의 대표적인 선도 사례로 주목받고 있음

○ 프랑스는 해외로 분산된 자국 기업 캡티브를 국내로 유치하고 대형 재난 위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2023년 완충 장치(적립금/준비금)를 허용<sup>6)</sup>하는 등 자국으로 캡티브를 유치하려는 온쇼어 설립 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sup>7)</sup>

- 기존의 프랑스 기업은 캡티브 보험의 국내 기반이 제한적이었으며 이로 인해 세수·전문인력·서비스 산업이 해외로 유출되고, 데이터 감독의 가시성이 약화되어 국내 리스크 관리 역량과 재보험 수용 능력 확충이 지연되고 있다고 인식함
- 동 제도는 특정 손해보험 리스크에 대비하여 캡티브가 평상시 이익의 일부를 장부상에 적립해 두었다가 대형 손해

3) European Commission(2025), "Savings and Investments Union(SIU)", March 2025; HM Treasury(2025), "Financial Services Growth and Competitiveness Strategy(10-year strategy, published July 2025)"

4) 오프쇼어에 캡티브를 둘 경우, 낮은 법인세율(법인세율이 낮은 국외 도미셀(Domicile)에 캡티브 보험이 설립됨)이 적용되어 세무상 장점이 있었음

5) 캡티브 보험의 준비금과 운용되는 자본에 대해 같은 EU Solvency II 규제라도 EU 역내 각국의 감독당국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자본요구, 리스크평가 등이 달라질 수 있음, 따라서 감독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동하는 나라로 캡티브를 두려는 유인이 생김(감독 아비트리지)

6) 이를 캡티브 전용 '레질리언스 준비금(Provision pour Résilience)' 제도라고 하며 2023년 재정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함

7) WTS(2024. 1. 22.), "France: New regime for the set-up of a captive reinsurance company"

발생 시 이를 환입해 손실과 상계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적립 단계에서 과세를 이연하면서 재무제표 충격을 완화하고 기업의 위험 관리 여력을 높이는 장치로 기능함

- 해당 제도 도입 이후 2023년 말 15개였던 프랑스 재보험 캡티브 수는 2025년 10월 말 기준 23개까지 증가했으며, 현재 감독당국(ACPR)에 약 10개가 추가로 심사 중이라 가까운 시일 내 30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sup>8)</sup>

○ 영국은 런던 보험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자국 기업의 리스크 재무전략 다변화를 목표로, 세제 인센티브보다는 비례적 규제와 인가 효율성을 앞세운 온쇼어 캡티브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음<sup>9)</sup>

- 영국은 런던 보험시장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리스크 재무전략 다변화를 내세워, 2025년 7월 온쇼어 캡티브 제도 도입 방침을 공식화하였으며, 2027년경 제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그동안 영국은 버뮤다 등 역외 설립지에 대한 선호가 강해 자국에 캡티브를 둘 유인이 크지 않았고, 업계는 이러한 제도 부재가 자본·인력·서비스의 해외 유출로 이어진다고 지적해 왔음
- 또한 중견·중소기업도 활용할 수 있는 캡티브 보증을 제공하기 위해 일반 보험회사보다 낮은 자본요건, 간소화된 보고·인가 절차를 핵심 설계 원칙으로 제시하고, 캡티브 운영 및 규제 비용을 낮춰 경쟁력을 확보함<sup>10)</sup>

○ 프랑스·영국 외에도 이탈리아, 몰타 등 여러 국가가 온쇼어 캡티브 확대 정책을 보이고 있으며, EU 차원의 비례 규제 강화 논의와 맞물려 유럽 내 캡티브 설립 기반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sup>11)</sup>

- 이탈리아에서는 에넬(Enel), 프리즈미안(Prismian) 등 대형 그룹이 2023~2024년에 재보험 캡티브를 자국 내에 설립하거나 역외 캡티브를 이전하기 시작함
- 몰타 역시 EU 내 독립 캡티브 설립 대신 셀 단위(개별 중소기업이 보유할 수 있는 캡티브)로 위험을 보유하는 구조 가진 보호 셀(PCC)제도를 통해 중견·중소기업이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온쇼어 방식의 캡티브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2027년부터 발효 예정인 Solvency II에 따라, 리스크 규모 및 복잡도가 작은 회사를 ‘소규모·비복잡 사업자’로 분류해 보고·거버넌스·리스크 관리 의무를 간소화하는 규정이 도입될 예정임<sup>12)</sup>
  - 소규모·비복잡 사업자로 분류된 캡티브는 자본 규제 계산과 보고·공시, 지배구조 요건이 간소화돼 운영 부담이 줄어들어 온쇼어 설립에 따른 대형 보험회사 수준의 규제·컴플라이언스 비용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음

○ 유럽의 온쇼어 캡티브 확산을 위한 제도 개편은 리스크의 증가, 금융시장 경쟁력 제고, 규제 개편에 따른 오프쇼어 장점의 약화가 결합된 결과로, 국내에서도 향후 대형 리스크 증가에 따른 기업보험의 보장 공백 대응과 리스크파이낸싱 서비스의 경쟁력 확보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8) Captive Review(2025. 11. 4.), “France on course to hit 30 captives in “coming months””

9) GOV.UK(2024. 11. 14.), “Captive insurance: Consultation response”

10) 중소기업의 독립적인 캡티브 운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들의 소형 캡티브(셀)를 포괄해서 법인으로 대리해 주는 보호셀 회사(PCC)제도를 운영하기도 함

11) Commercial Risk(2025. 10.), “Spotlight on Captives 2025”

12) Reinsurance News(2025. 11. 13.), “European captive insurers show strength and resilience amid global market shifts”